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 (약칭:협의회)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협의회 회칙 제8 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의거 회장, 감사, 각종 선거(투표)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공정히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선거인)

1. 본 규정의 선거인이라 함은 회칙 제28조(회비)에 의거 협의회 임원진(회장, 전임회장, 감사, 국장, 상임부회장, 비상임부회장, 지역이사, 자문위원)으로 한다.
2.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협의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 공고 전일로 한다.
3. 협의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한 선거인은 해당 입후보직의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제 4 조 (피선거권 자격제한)

1. 회칙 6조에 해당했던 자는 입후보 할 수 없다.

2. 본인, 특수 관계인 또는 법인 등 명의신탁 형태 등으로 동종 타 택배사를 겸업하고 있는 자는 회장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

제 5 조 (자 격)

1. 회장의 피선거권은 협의회 가입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을 경과한 자로 한다.
2. 감사의 피선거권은 협의회 가입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을 경과한 자로 한다.
3. 부회장 및 지역이사는 협의회 가입기간이 연속 2년 이상을 경과한 자로 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그 중 선임자로 한다.

제 6 조 (선거사무의 협조)

협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7 조 (구성)

선거업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회칙 제8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 1명, 위원은 지부별 동수와 감사 2명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 감사가 입후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한다.

제 8 조 (확정공고)

본 규정 제7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위원은 선거일 45일 전에 공고한다.

제 9 조 (기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칙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2. 입후보자의 등록, 심사, 사퇴 수리 및 기호추첨
3. 선거인의 자격심사 및 명부작성
4. 투 개표소의 설치
5. 투 개표의 철저한 관리
6. 입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등록
7. 선거(투표)결과 발표 및 당선자 결정
8. 상임 부회장, 부회장 및 각 지역이사 선임 발표
9. 회장단 이취임식
10. 선거록의 작성
11. 선거운동의 통제 및 승인
12.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전달 및 부착

13.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14. 무효표 결정 및 감표 업무
15. 선거 종사원 결정
16. 선거에 관한 유권해석
1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0 조 (중립)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1 조 (임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60일 전에 구성되며,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전 까지로 한다.

제 3 장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 12 조 (등 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45일 전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하며, 회장 및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기준 30일 이내 선관위에서 정한 날짜 내에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관리규정 제 7조에 해당되었던 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입후보 신청서 1통 (선관위 서식 제1호)
2. 입후보 소견서 1통 (선관위 서식 제2호)
3. 입후보자 서약서 1통 (선관위 서식 제3호)
4. 입후보 등록서류는 선거 종료 후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2회 이상 협의회장 및 감사로 역임한 자는 해당 보직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 13기 협의회장 및 감사 선출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부임한 임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6.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사퇴서(선관위 서식 제7호)를 제출하여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현직 회장이 회장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는 자동으로 정지되며, 상임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현직 회장이 단독 출마하는 경우 임기는 보장한다.
7. 현직 감사가 감사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임기를 보장한다.

제 13 조 (등록확정 및 무효)

선거관리위원회장은 입후보 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본 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을 확정하여 즉시 이를 공고한다. 단, 심사결과 본 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결함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본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수정되지 않을 시 등록을 취소한다. 이를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 5일 전까지 예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예비 등록 이후에도 선관위 통보 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지만 후보등록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을 일체 불허한다.

제 14 조 (후보자 기호 추천)

본 규정 제 12조에 의거 서류를 접수 완료 후 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호 선정 방식에 따라 기호를 부여받는다.

제 15 조 (입후보 사퇴)

1. 입후보 등록을 필하고 등록확정 후 또는 확정 전에 입후보 사퇴를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관위 서식 제8호)
2. 전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퇴서 접수 즉시 입후보 등록 신청자 명단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이 절차가 끝나면 사퇴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3. 본 규정 제13조에 의거 확정 공고된 후 사퇴서를 제출할 시에는 즉시 공고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16 조 (선거운동 기간)

당해 선거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14조에 의거 확정된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 17 조 (선거운동의 허용범위)

1. 선거와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후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있거나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것만 유효하다.
2. 홍보물 사본은 선관위에서 보관한다.
3.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고 승인한 홍보물을 취합해 협의회 홈페이지에 1회 게재한다.

제 18 조 (통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고, 당선 이후라도 선관위에서 전국이사회회의에 심의를 상정하고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회사 측의 개입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가 방해 또는 동조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될 경우.
2.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행위를 했을 때.
3. 입후보자 부정행위 등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4.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연의 공여, 공여를 약속한 행위.

제 5 장 선거구 및 투·개표

제 19 조 (선거일자)

1. 회장 및 감사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총회 일자로 하며 선거일 기준 45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공고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회장 및 회장단 보궐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준한다.

제 20 조 (선거방법 및 투표장소)

1. 입후보 등록이 공고된 회장, 감사 입후보자는 본 규정 제 3조에 의거 협의회 임원진(회장, 전임회장, 감사, 국장, 상임부회장, 비상

임부회장, 지역이사, 자문위원)의 간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후보로 등록된 회원이 없는 경우 전국이사회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2.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회 도는 전국이사회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회칙 제20조 6항에 의거 회장단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규정 제3조의 선거인이 행사하며 선거일 기준 협의회 임원진(회장, 전임회장, 감사, 국장, 상임부회장, 비상임부회장, 지역이사, 자문위원)으로 한다.

제 22 조 (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3조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한다.

제 23 조 (이의신청 및 결정)

1.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람 기간 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그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4 조 (전자투표)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 기간 전자투표로 진행한다.

제 25 조 (투표방법)

1. 선거인은 입후보자 1인에 한하여 투표한다.
2. 투표는 선관위가 정한 선거일 중 문자로 발송되는 투표 링크에 접속하여 투표한다.

제 26 조 (참관인)

1. 회장 후보자 참관인은 후보자별 1명으로 한다.
2. 감사 후보자 참관인은 후보자별 1명으로 한다.
3. 선관위는 참관인의 요구 시 실시간 선거인 투표율을 전달한다. (수정)

제 27 조 (개표)

1.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즉시 개표를 진행한다.
2. 선관위 위원장은 개표 후 선거인 투표율과 후보자별 득표수를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한다.

제 6 장 당선

제 28 조 (회장)

1. 단독 출마의 경우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 확정한다. 단,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동 조 3항에 의해 선출한다.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입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다득표자만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3. 후보등록이 없는 경우 전국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제 29 조 (감 사)

1. 감사는 후보가 2명 이하의 경우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당선 확정한다. 단,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후보 자격을 상실하며, 동 조 3항에 의해 선출한다. 3명 이상 후보 등록한 경우 다득표순으로 확정한다.

2. 입후보자가 없을 시 전국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제 30 조 (보궐선거)

임기 전에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1. 회장

회장 유고 시(사퇴, 불신임 등 일신상의 이유로 더이상 회장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잔여 임기 동안 상임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시 총회에서 재선출한다.

2. 감사

감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사표, 불신임 등 기타 1개월 이상 공석일시 전국이사회회의의 의결로 재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와 무관하다.

3. 선거 및 당선에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불신임 결정 경우 - 회장의 불신임은 전국이사회회의를 통하여 재적 인원의 2/3이상 찬성시 가결로 인정한다.

제 31 조 (당선자 공고)

회장, 감사의 당선 확정시 되면 당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 공고를 해야 한다.

제 32 조 (이의 신청)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선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며 그 결과를 선관위는 검토 결정하여 2일 이내에 통보 및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 (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연 해산한다.

부 칙

제 1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0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수정)

제 3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조외 수정)

제 4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각조 수정)

제 5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1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각조 수정)

제 6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각조 수정)

제 7 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20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각조 수정)

제 8조 본 선거관리규정은 2022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각조 수정)